

1980년대의 민간경비연구★

안황권*

요 약

1980년대의 민간경비는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된 제도적인 틀 속에서 성장하는 시기였다. 1980년 민간경비의 발전을 가져온 동인은 우선 저 달러가치, 저 국제금리, 저 원유가격이라는 국제경제환경에 힘입어 국내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오면서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전자산업 고도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던 반도체, 컴퓨터 및 통신기기분야가 육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한 서울국제무역박람회,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등의 국제행사와 국내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민간경비가 참여하여 성공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제고와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또 1980년대에는 일본 세콤을 비롯하여 외국기업의 한국투자 또는 한국의 기술도입이 민간경비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동안 인적 경비를 중심으로 해오던 민간경비가 기계경비 또는 시스템경비가 보완되는 기계경비시대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의 민간경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분석하고 민간경비에 발전적인 계기가 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A Study on Private Security in the 1980s

Ahn, Hwang Kwon*

ABSTRACT

In the 1980s, private security was established in the framework of institutional framework with the Security Industry Act which was enacted in 1976. The agents who brought in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tor in 1980 enjoyed a boom in the global economy, affected by its high-flying dollar value, low international interest rate, low oil prices, and the blooming economy.

In addition, the semiconductor,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that was promoted in accordance with the e-Literacy plan were raised. Following the economic development of various events such as Seoul International Trade Fair, "86 Asian Games, " and "88 Seoul Olympic Games, ", private security expenses were enhanced by increasing awareness of civilian expenses.

Also, in the 1980s, Korean investment in foreign companies, including Japan's Secom, or Korean technology, brought many changes to the private security. Meanwhile, the cost of security, which has been centered around human expenses, has brought about the era of mechanized spending, or machine security expe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soci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private security in the 1980s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 important factors that contribute to private security.

Key words : private security , security service act, security industry, 86 Asian Games, 88 Seoul Olympic Game

접수일(2016년 10월 7일), 수정일(1차: 2016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2016년 10월 26일)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

★ 본 연구는 2015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 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서 론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후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에는 민간경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초반 한국경제는 물가폭등, 불황에 따른 가동률 저하, 외채의 급증이라는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정부는 구조조정정책을 통하여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행스럽게 낮은 달러가치, 국제금리, 원유가격이라는 국제경제환경에 호재가 되어 1980년대 후반에는 제조업이 활황이 되어 고도성장을 가져오고 무역수지 흑자 42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물가도 안정되어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1980년대는 한국의 민간경비가 단순한 인력경비 중심에서 벗어나 기계경비가 보완되는 시기였다. 특히 일본의 세콤, 종합경비보장, 센트럴경비보장, 전일경(全日警) 등의 업체들이 한국경비회사와 기술 및 업무 제휴를 조건으로 진출함에 따라 기계경비업무가 도입된 시기였다.

특히 1980년대에는 1982년 서울국제무역박람회의 행사장 경비, 1983년 프로야구단의 스포츠행사경비,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경기장 경비 등을 민간경비가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그 위상이 올라간 시기였다.

이와 같이 1980년대는 한국민간경비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그 위상을 높여 기반을 다진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76년 용역경비업법의 제정이 한국 민간경비산업에 커다란 분수령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 1980년대는 이를 바탕으로 민간경비가 경비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위상을 제고한 시기였으므로 이 과정을 평가하고 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약을 하기 시작한 1980년대의 민간경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분석하고 민간경비에 발전적인 계기가 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2. 1980년대 민간경비 환경과 치안정책

2.1 1980대의 민간경비 환경과 치안정책의 변화

한국 민간경비는 1970대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그것은 우선 경비산업의 이정표가 되는 용역경비업법이 1976년에 제정됨에 따라 경비업이 제도적으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는 이러한 제도적 바탕 위에서 발전하는 시기였다. 우선 1980년대에 한국 국민총생산의 성장률은 1981년에 6.2%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수출도 15%에서 매년 증가하여 경제기반이 튼튼해짐에 따라 국력을 신장하는데 국제 행사의 유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행사와 다양한 국내행사에 민간경비가 참여하여 성공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기여하게 된 것이다. 1982년 국제무역박람회에 연인원 4,563명이 참가하였으며, 1983년 KBS 주관 우주과학박람회에 3,378명, 호국대행진에 1,712명, 로봇과학전시회에 1,488명의 경비원이 참가하여 성공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경비업체가 참여한 행사는 1982년에 한국 전자공업전시, 프랑스 향수전, 1983년에 우주과학박람회, 호국대행진, 로봇과학전, 사갈미술전, 올림픽제품 관련 전시회, 주방기기 전시회, '83 풍년대축제, 한국 전자전람회, 삼성관경비, '83 기계전, '83 한국도자기 축제, 한아름 바자회, 팔도명산물 전시장, 1984년에 청소년 예술제, 한국방송통신기계전, 올림픽관련 제품전, 피카소 전시장, 국가발전홍보전, 한국전자전시회, 한국 국제기계부품전, 국제그룹 독립관, 항공기부속 전시장, 올림픽제품 전시회, 국제우표전시전, 전국도서전시장, '84 풍년제, '84 도자기전, 1985년에는 금형공구전시회, 월드컵 예선전, 도자기 축제, 종합전시전, 대통령컵 축구, 국제방송통신기계전, 기계설계전시관, 월드컵 축구, 한국40년 전야축제, 코파스전, 국제방송통신기계전, 피혁제품 전시전, 생활용품전시전, 호주인 작가 작품 전시회, 에너지 자재전, KS표시 상품전, 한국전자전, 한국기계전, 시민문화재 전시회, 1986년에는 사무기기 및 컴퓨터 전시, ANOC 서울총회, 한국공작기계 전시전, 한국섬유기계전시전, 서울국제방송통신 기계

전, 국제 인쇄기계전시전, 한강축제 전야제, 한국공예 전시장, 서울아시안게임 경호경비, 한국전자전람회, 1987년에는 생산장비 국제전, 포장기계 및 식품전시, 스위스 엑스포, 한국전자부품전시, 한국방송기기전, 국제금형공구전, 한국기계전, 대통령배 축구대회, 종합전시관 안내, 한국전자전람회, 국제섬유소재 및 상품전시회 등이다.

1982년 1월 6일을 기해 36년만에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되면서 국민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민간경비업계에 호재로 작용하였다. 통행금지 해제는 국민들이 보다 자유스런 생활을 영위한 반면 주요 범죄가 증가하여 민생치안이 불안하게 되어 가정용 도난방지 기기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1987년에는 6.29 민주화선언으로 급속한 민주화와 함께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각계 각층의 요구가 분출되고 특히 노사분규가 일어나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근로조건이 향상되었으나 근로자 개인중심의 사고가 팽배해졌다. 그리고 단순 일용 근로자와 잡급직 노무자들의 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경비 직종에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1980년대에 사무실 자동화(Office Automation) 시대가 막이 오르면서 사무실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 금융, 항공, 운송, 전자업 순으로 OA 기기가 놓여지기 시작한 후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이용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계경비의 활성화가 시작되었다.

한국 용역경비업 제1호 허가를 받은 한국경비실업(주)(대표 문학동)의 최치환 회장이 회사인수를 요청하자 삼성 이병철 회장은 일본과 합작을 제의하였다. 그 결과 삼성이 변경된 한국경비보장에 지분참여하는 방식을 취한 다음 일본 SECOM과 합작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 많은 일본 기계경비업체가 한국에 진출하여 단순 인경비 중심의 한국경비시장에 기계경비가 보완되기 시작하였다.

2.2 1980년대 경비업법의 개정

우리나라의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채 1953년경부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야채를 납품하고 창고와 사택을 경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70년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가운데 특히 범죄가 급증하여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준경찰력의 양성 차원에서 1976년 12월 31일(법률 제2946호)에 경비업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등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물의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경비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경비업의 실시에 적정할 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980년대에 경비업법은 세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81년 2월 14일(법률 제3372호) 제1차 개정은 용역경비원의 결격사유 중 연령 상한이 50세였는데 이를 55세로 상향한 것이다.

1983년 12월 30일(법률 제3678호) 제2차 개정에서는 경비업자의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던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그리고 무허가영업행위에 대한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한 것이다. 그리고 휴업신고 의무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완화하였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①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 제9조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④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와 자료의 제출 또는 임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정하였다. 그리고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였다.

1989년 12월 27일(법률 제4148호) 제3차 개정에서는 용역경비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경비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경비원의 자격연령을 연장하며,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보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용역경비원이 될 수 없는 연령제한을 18세이하이거나 55세이상에서 18세

미만이거나 59세이상으로 완화하였다. 그리고 용역경비협회는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경비업자는 손해배상을 위해 현금등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대신에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허가관청에 신고할 사항으로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폐지·변경한 때”를 추가하였으며, 용역경비업자의 의무조항에 “용역경비업자는 불공정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용역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와 “용역경비업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후생복지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18세미만이거나 59세이상인 자”로 변경하하였으며, 허가취소 사유 중 제12조제2항제2호중 “6월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를 “1년이내에 용역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로 강화하였다. 행정처분 관련 조항에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용역경비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용역경비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였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여야 한다”를 “이행보증보험 또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다. 또 공제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①용역경비협회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용역경비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건전한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2.3 1980년대 청원경찰법의 개정

청원경찰법은 1962년 4월 3일 법률 제1049호로 제정된 후 제도가 생소하고 경비부담 등의 이유로 실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다가 1973년에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73년 12월 31일에 법률 제2666호로 전부 개정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세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80년 1월 4일(법률 제3228호) 제2차개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청원경찰은 도지사가 임용하던 것을 청원주가 임용하도록하되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②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였다. ③ 도지사는 청원경찰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청원주에 대하여 그 청원경찰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도지사는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등이 범위반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배치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배치폐지 및 중지의 결정이나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 또는 중지한 자,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청원경찰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다.

1981년 2월 14일(법률 제3371호) 제3차 개정에서는 청원경찰의 배치·임용승인·배치의 중지·해임명령 및 감독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신속과 간소화를 기하였다.

1983년 12월 30일(법률 제3677호) 제4차 개정에서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축소되거나 그 시설의

중요도가 저하되는 등 청원경찰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지사는 그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다른 법률과 관계되는 조문을 정비하였다.

2.4 경비협회의 1980년대 활동

2.4.1 용역경비협회의 정관개정과 활동

용역경비업법의 제정에 따라 1978년 법정단체로 용역경비협회가 창립된 후 회원수가 증가됨에 따라 경비협회의 규모도 확장되었다.

(사)한국용역경비협회의 초대회장(1978. 9. 21~1979. 7. 5)은 최치환씨가 피선되어 활동했으나 제1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그 신분상 이유로 한국경비보장(주) 대표이사 회장직을 1979년 1월 9일자로 사표를 제출하여 최 회장을 특별회원으로 하여 계속 회장에 추대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는 제2대 고동철 회장 ~ 제6대 정준혁 회장까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표 1> 1980년대 경비협회 회장

대수	임기	회장명
제2대	1980. 09. 18 ~ 1982. 09. 07	고동철
제3대	1982. 09. 08 ~ 1984. 09. 20	황헌진
제4대	1984. 09. 21 ~ 1986. 09. 30	김형중
제5대	1986. 09. 30 ~ 1989. 01. 25	윤 관
제6대	1989. 01. 26 ~ 1991. 01. 22	정준혁

용역경비협회의 정관은 1980년대에 10차례 개정이 있었다. 주된 내용은 협회 이사의 정원을 확대하는 정관개정과 임원정수를 조정하는 것 등이었다.

<표 2> 1980년대 용역경비협회 정관개정 내용

일 자	개정 횟수	내 용
1980. 09. 08	제 2 차 개정	-이사정원 10인 이내인 것을 15인 이내로, 감사 1인을 2인으로 변경함 -사무실을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성진빌딩으로 이전

1982. 09. 08	제 3 차 개정	-이사정원 15인을 6인으로, 감사 2인을 1인으로 변경함 -사무국장을 전무이사로 개칭하여 임원에 포함함
1983. 05. 24	제 4 차 개정	-부회장 2인을 1인으로 감축, 이사정원을 7인으로 함 -사무실을 서울시 중구 내자동 무궁화회관으로 이전
1984. 02. 24	제 5 차 개정	-임원의 수와 회장단의 수를 조정함
1984. 10. 02	제 6 차 개정	-부회장 2인으로, 이사를 8인으로 변경함 -사무실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교원공제회관으로 이전
1986. 03. 24	제 7 차 개정	-회비징수 근거와 기준 마련 -제명 회원, 자격정지 회원은 의결 정족수에서 제외함
1987. 03. 06	제 8 차 개정	-월회 15만원 일률부과제를 월 5, 10, 15만원으로 차등 부과함
1987. 06. 17	제 9 차 개정	-의결정족수가 재석회원 2/3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완화 -서울시경 경비전화 개설
1989. 02. 16	제10차 개정	-임원 수를 증원함
1989. 06. 28	제11차 개정	-임원 수 증원 -고문제도 활성화 -가입회비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협회는 정관 개정 외에 경·조비 운용규정(1983. 02. 25), 포상규정(1984. 04. 27), 활동비 운영규정(1984. 04. 27), 여비규정(1984. 04. 27), 퇴직금 지급규정(1984. 04. 27), 징계규정(1985. 08. 13), 위임전결규정(1986. 11. 13), 위원회 설치규정(1986. 11. 13), 윤리규정(1987. 04. 27), 예산회계규정(1989. 02. 01), 지도위원회 위촉규정(1989. 02. 01), 지방협회 설치규정(1987. 04. 27) 등을 제정하여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체계를 점차 확립해갔다.

2.4.2 교육사업

경비협회는 경비업법에 따라 법정 경비원 교육기관 일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과 제휴하

여 각종 민간경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977년에 제정된 용역경비업법 시행령(6. 30 제정, 대통령령 제8610호)과 시행규칙(11. 22 제정, 내무부령 242호)에서 신입교육과 보수교육을 규정하고, 이중 신입교육은 용역경비협회가, 보수교육은 당해 경비업자가 실시하도록 하였다. 보수교육은 1996년 7월1일(대통령령 1510호)에 명칭을 직무교육으로 변경하였다.

용역경비협회가 실시한 신입교육 실적을 보면, 1980년 5,067명, 1981년 648명, 1982년 912명, 1984명 589명, 1985년 133명, 1986년 450명, 1987년 502명, 1988년 563명, 1989년 841명을 교육하였다.

2.4.3 정책결정 과정 및 결과

1980년대 용역경비협회의 정책결정은 각종 회의를 통해 의결하는 과정을 거쳤다.

용역경비협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정기총회를 1회 이상 개최하였으며 이사회와 각종 분과위원회를 열어 협회의 주요사항을 결정하였다.

<표 3> 1980년 용역경비협회 정책결정 내용

연도	주요 내용
1980	-총회 3회 -회장을 복수 추천함
1981	-총회 2회 -삼성그룹 일본합자 경비업 진출 저지 방안 논의
1982	-총회 2회, 이사회 2회, 소위원회 2회 -사무국장을 전무이사로 개정
1983	-총회 1회, 이사회 7회 -복제자율화 방안 연구
1984	-총회 2회, 이사회 7회 -재향군인회의 용역경비개발 개입저지 논의
1985	-총회 1회, 이사회 5회 -청원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1986	-총회 2회, 이사회 7회, 분과위원회 5회 -아시안게임 용역경비에 관한 사항
1987	-총회 1회, 이사회 8회, 분과위원회 6회 -경비원 최저임금 기준 설정 -용역경비업법 개정 추진

1988	-총회 1회, 이사회 5회 -저가 응찰 제도적 방지방안 -부적격 경비원 재취업 방지
1989	-총회 1회, 이사회 8회, 분과위원회 13회 -한국경비협회로 명칭 변경 -기계경비 신설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청원경찰법 개정안 논의

2.4.4 지방협회의 창립과 활동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지방화시대가 대두됨에 따라 경비협회에서도 지방협회의 설립이 본격화되었다. 경비협회는 1987년 4월 27일 지회설치규정을 제정한 후 이를 지방협회 설치규정으로 개정하였다. 이 규정의 목적은 지방협회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그 주된 내용은 설치, 설치요건, 설치절차, 승인, 등기, 업무,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제정, 지방협회장 선출, 지방회장의 책무, 지방회장의 임기 등에 관한 것이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1989년 6월 29일 대구·경북지회의 설치를 승인되어 경비협회의 지방활성화를 위한 서막이 열렸다.

3. 1980년대 민간경비의 실태와 발전요인

3.1 1980년대 기계경비의 도입

1980년 외국기업의 한국투자 또는 한국의 기술도입은 민간경비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그동안 인적 경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민간경비가 기계경비 또는 시스템경비가 보완되는 기계경비시대를 가져왔다.

<표 4>는 일본의 민간경비회사와 합작 또는 기술 제휴한 내용이다. 1980년에는 한국경비보장(현 에스원)이 일본 세콤과 합작 인가를 받았으며, 1981년에는 용진실업이 미국의 워켄헨사와 합작하여 한국워켄헨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982년에는 범아종합경비가 일본 종합경비보장과 합작하였으며 1983년에는 대한중앙경비보장이 일본 센트럴경비보장과 합작 인가를

받았고, 1984년에는 한국보안공사(현 캡스)가 미국 ADEMCO 기술제휴 및 대리점 계약체결을 체결하였다.

<표 4> 1980년 외국 민간경비와 합작, 기술제휴 현황

연도	내용
1980. 09	한국경비보장(현 에스원)과 일본 세콤과 합작 인가
1981. 11	용진실업과 미국의 워켄헷사와 합작하여 한국워켄헷사 설립
1982. 01	범아종합경비와 일본 종합경비보장 합작 인가
1983. 11	대한중앙경비보장과 일본 센트럴경비보장 합작 인가
1984. 08	한국보안공사(현 캡스)와 미국 ADEMCO 기술제휴 및 대리점 계약체결

한국의 계약경비는 그동안 주로 인적 경비에 치중하였으나 1980년대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초기에 모든 기기들이 거의 모두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점차 원가절감을 이유로 국내에서도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제조기술을 가지게 되었다.

초기에는 시스템 구성기기가 단순한 감지신호를 관제센터로 보내는 역할이었다. 지금과 그 기본은 변함이 없지만 단말기에서 관제센터로 보내는 신호 자체가 얼마나 신속하고 신뢰성이 있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1].

3.2 1980년대의 국제행사와 민간경비 활동

3.2.1 '82 및 '84 서울국제무역박람회

“건국이래 최대의 국제행사”라고 할 정도의 서울국제박람회가 1982년 9월 16일~11월 18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박람회에는 676개 국내업체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나이지리아 등 해외 40여 개국에서 262개 업체가 참여하는 행사였다.

박람회장 내의 시설보호 및 안전을 위해서 민간경비가 자체 안전대책을 구축하기 위해 경비대책을 수립하고 경비용원들이 1차적으로 시설보호, 질서유지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

행사기간 중 많은 인파로 매표구 증설, 질서유지요원이 증원되어 1일 87명이 근무하기도 했으며, 행사연장기간 중에도 1일 60명이 근무하기도 하였다. 인력경비 외에도 웬스탐지기 70개, 적외선 탐지기 4편, 열감지 센서 4대, CCTV 2대, 무전기 7개 등을 활용하였다[2].

1982년 서울국제무역박람회가 관람객 220만명과 97개국에서 1만명의 바이어들이 방한하여 성공적으로 마치게 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2년후 '84 서울국제무역박람회가 개최되었다. 1984년 9월 16일~11월 4일까지 연인원 4,115명의 경비인원이 투입되어 성공리에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1982년 서울국제무역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범아공사와 대한재향군인회 산하 업체인 향우용역(주)이 선정되어 참여하였다. 기계경비는 소음과 도로면에 위치한 열악한 환경으로 1982년 행사에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웬스탐지기 70개, 적외선탐지기 4개, 열탐지기 4개, CCTV 2개, 무전기 7개가 활용되었다.

3.2.2 '86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은 1986년 9월 20일~10월 5일까지 16일간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대회기간 동안 76개국 10,354명이 참가하였으며, 관람인원은 367만명에 이르렀으며, 대회기간 중 OCA 총회 등 46회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 참여한 민간경비 현황은 <표5>과 같다.

<표 5> '86 아시안게임 경기장 민간경비 현황[2]

배치일	회사명	경비대상 시설	배치인원		시설주	계약기간
			청원경찰	용역경비		
'86. 03.03	신천개발(주)	올림픽회관	20		조직원회	1년

'86. 06.03	취대 신	성대(수 원) 태권도 경기장		20	성 관 대	3 개 월
'86. 07.01		올림픽 공원경 비본부		5	올 림 조 위	1 9 2 일
		올림픽 공원중 앙공급 실		10		
		올림픽 공원진 입로		28		
		체조 경기장		7		
		역도 경기장		7		
		싸이클 경기장		7		
		펜싱 경기장		7		
		테니스 경기장		7		
'86. 07.01	향우 용역 (주)	과천 승마경 기장		60	한 국 사 회	6 개 월
		원당 승마경 기장		28		
총계	4개 사	13개소		20	198	

3.2.3 '88 서울올림픽

'88 서울올림픽은 1988년 9월 17일 ~ 10월 2일까지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IOC 161 회원국에서 총 2만6,329명이 참가하였으며, 대회운영요원은 8만명, 관광객은 24만명, 경기장 관중은 200만명이 참가했다.

시설은 서울종합운동장 등 35개 경기장이 서울과 지방에서 운영되었으며, 선수촌과 대회 운영본부 등 관련시설은 67개소, 연습장은 73개소가 설치, 지정되었다. 대회 기간 중에 IOC 개막 공연을 비롯한 주요 행사, 공연, 전시행사, 연회 등 각종 문화행사가 71개소에서 125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10개소에서 40회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민간경비업체는 1988년 8월 30일 현재 총 10개 시설에 978명이 배치되었다. 배치장소는 IBC(국제방송센터), 미국NBC방송단, 우주과학관, 올림픽공원 및 6개 경기장, 올림픽회관, 올림픽웨미리타운, 올림픽 기념조형물, 과천 경마장, 원당 경기장, 여의도 고수부지 등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경비업체에서 자원봉사한 인력은 마라톤코스 주변 경비 및 한강축제 주변 경비에 배치되었다[2].

그리고 올림픽경기장 및 관련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정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경찰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성공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4. 결 론

1980년대의 민간경비는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된 제도적인 틀 속에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주로 치안서비스는 공경비 특히 경찰이 제공한다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시민이나 민간경비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준경찰력의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치안서비스의 주체로 민간경비를 인정하는 치안정책의 변화가 온 것이다.

1980년 민간경비의 발전을 가져온 동인은 우선 저달러가치, 저 국제금리, 저 원유가격이라는 국제경제 환경에 힘입어 국내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오면서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전자산업 고도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던 반도체, 컴퓨터 및 통신기기분야가 육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한 국제행사와 국내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민간경비가 참여하여 성공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제고와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82년과 1984년 서울 국제무역박람회와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에 민간경비가 참여하여 성공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 1980년에 민간경비 역사에 괄목할만한 것은 외국기업의 한국투자 또는 한국의 기술도입이 민간경비 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동안 인적 경비를 중심으로 해오던 민간경비가 기계경비 또는 시스템경비가 보완되는 기계경비시대를 가져왔다는 점

이다.

1970년대가 민간경비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여 기틀을 다진 시기라고 한다면 1980년은 이러한 기틀 위에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지난날을 반추하고 새로운 시큐리티 환경에 대처해나가면서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조구현(2004), 시스템 경비산업의 이해, 한국시큐리티마케팅연구소, pp. 72-73.
- [2] 김정환·서진석(2009), 한국경비산업발전사, 백산출판사, pp. 168~169.

[저자소개]



안 황 권 (Ahn, Hwang Kwon)

1981년 경기대학교 법정대학(행정학사)
1989년 경기대학교 대학원(행정학박사)
현재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

e-mail : ahk9027@hanmail.net